

[일련번호 : 2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감사 1명을 둔다. 다만, 감사의 전문성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같은 조례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 제3항에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프로그램별로 강좌 및 강

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 자치회관 운영세칙」에 따르면,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연 1회 결과 분석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연 1회 결과 분석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현황

연번	연도별	보고서 작성 여부	공개여부	만족도 조사 여부	공개여부
1	2023년	작성	공개	실시	미공개
2	2024년	작성	미공개	실시	미공개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